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6.14(화) 설명회 시작(13:30) 이후 보도		
배 포 일	2022. 6. 14. / (총 10 매)			
보건복지부	과 장	김 은 영	전 화	044-202-2550
응급의료과	담 당 자	이 지 연		044-202-2557
국립중앙의료원	센 터 장	김 성 중	전 화	02-6362-3400
중앙응급의료센터	담 당 자	조 해 경		02-6362-3430

2022 응급의료기관 3년(2023~2025) 주기 재지정 평가 실시

- 법정 기준 충족, 실적·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-
-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 실시 추진 -

□ 2023년~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「202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」을 6월 14일(화) 발표하고,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.

*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(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)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5.1월)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재지정이다.
-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.1.1.~2021.12.31.이었으나,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재지정 기간을 2022.12.31.까지 1년 연장하였다.

-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,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,

< 2022년 6월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 >

	권역응급의료센터	지역응급의료센터	지역응급의료기관	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
지정현황	40개소	125개소	243개소	6개소
지정권자	복지부장관	시·도지사	시장·군수·구청장	복지부장관

-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, 심장충격기·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, 응급실 전담 의사·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※ 응급의료기관별 세부 지정기준은 붙임 1 참조

-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('22년 기준 29백만원~257백만원)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.

※ 응급의료기관별 보조금 및 응급의료수가는 붙임 2 참조

□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*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,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

**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므로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

- 지정권자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,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(2023. 1. 1.~ 2025. 12. 31.)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.

<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>

구분	권역응급의료센터	지역응급의료센터	지역응급의료기관	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
신청·평가기간	6.15.~8.31.	9.1.~11.4.	11.5.~12.5.	6.15.~12.5.
지정결정	8.31. 까지	11.4. 까지	12.5. 까지	12.5.까지

※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세부절차는 붙임 3 참조

□ 이번 2022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**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해 **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**이다.

○ 우선 **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**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**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** 판단될 경우에도 **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**할 계획이다.

<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탄력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완화 적용 유형 >

❶ (유형 1) **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(보호자대기실, 주차장 등)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(격리진료구역·코호트격리구역·선별진료소 등) 중**
→ 공간 유무만 평가

❷ (유형 2) 권역응급의료센터 **응급전용입원실,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하여 확보 중*** → 2023.1.1.부터 동일 병동에 확보 가능함을 소명 시 인정

* 원칙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용입원실, 응급전용중환자실은 동일 병동에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대응 격리병상(긴급치료병상 등) 확보를 위해 타 병동으로 분리하는 사례 존재

○ 또한 이 재지정 평가가 **2022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**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하여 **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**할 계획이다.

□ 보건복지부 박항 공공보건정책관은 “**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,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.**”라며,

○ “**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**하면서, **충실한 현장 평가**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
2.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용
3.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 개요 및 세부절차

참고 1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

□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(시행규칙 별표 5의2)

구분	세부 내용
시설	○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,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○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,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○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○ 병상 간격 1.5m 이상 확보
장비	○ (응급실 전용 장비) 12유도 심전도기, 심장충격기, 인공호흡기, 환자감시장치 등 ○ (의료기관 확보 장비) 뇌압감시장비, ECMO, CRRT 장비, 인큐베이터 등 ○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일반구급차 1대
인력	의사 ○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: 5명 이상 ○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: 1명 이상 (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) ○ 응급실 전담전문의: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, 1명을 확보하고 매 10,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
	간호사 ○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,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○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, 매 5,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
	응급 구조사 ○ 재난, 교육,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○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
	행정인력 ○ 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·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○ 보안인력 1명 이상(24시간 응급실 전담)

□ 지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(시행규칙 별표 7)

구분	세부 내용
시설	○ 환자분류소 ○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○ 음압격리병상 1실 이상 ○ 일반격리병상 2실 이상 ○ 검사실 1실 이상 ○ 방사선실·일반촬영실, 처치실 등
장비	○ 제세동기, 인공호흡기, 주입기, 초음파검사기, 이동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, 급속혈액가온주입기, 보온포, CT촬영기, 일반X선 촬영기 등 ○ 특수구급차 1대
인력	의사 ○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(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)
	간호사 ○ 간호사 10인 이상(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 이상이 근무할 것)
	행정인력 ○ 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·자격을 가진 자로 1명 이상 확보 ○ 보안인력 1명 이상(24시간 응급실 전담)

□ 지역응급의료기관 주요 지정기준 (시행규칙 별표 8)

구분	세부 내용
시설	○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(환자 1만명 이상) 또는 5병상(환자 1만명 미만) 이상 ○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1실 이상 ○ 검사실 1실 이상 ○ 처치실 등
장비	○ 제세동기, 인공호흡기, 주입기, 환자감시장치, 부착형흡인기, 일반X선 촬영기 등 ○ 특수구급차 1대
인력	의사 ○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 이상 (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)
	간호사 ○ 간호사 5인 이상 (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또는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)
	그밖의 인력 ○ 보안인력 1명 이상(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)

□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(시행규칙 별표 6)

구분	세부 내용
시설	○ 응급환자 진료구역 5병상 이상,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2병상 이상 ○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, 일반격리병상 1병상 이상
장비	○ (응급실 전용 장비) 제세동기, 인공호흡기, 소아용 네뷸라이저, 환자감시장치 등 ○ (의료기관 확보 장비) 뇌압감시장비, ECMO, CRRT 장비, 인큐베이터 등
인력	의사 ○ 전문의 2명 이상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사 4명 이상 ○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,000명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10,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
	간호사 ○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: 10명 이상 ○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,000명 초과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,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
	그밖의 인력 ○ 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 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(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 전담) ○ 보안인력 1명 이상(24시간 응급실 전담, 권역·지역센터 응급실에 전담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)

참고 2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용

□ 응급의료기관 보조금

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예산 (2022년 국비 기준, 단위 : 백만원)			
구분	권역센터	지역센터	지역기관
평가결과 A	257	138	- * 2021년 A등급 없음
평가결과 B	198	99	59
평가결과 C	29	- * 2021년 C등급 없음	29

□ 응급의료수가

응급의료수가			
번호	응급의료수가	대상	주요 내용
1	응급의료관리료	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	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
2	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	권역센터 지역센터	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의 진료
3	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	권역센터	응급실내 중증환자병상에 대한 재정 보조
4	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	권역센터 지역센터	응급실내 병상에 대한 재정 보조
5	응급전용중환자실 관리료	권역센터	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에 대한 재정 보조
6	응급실 격리병상 관리료	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	응급실내 격리병상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
7	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선별료	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	응급환자 중증도분류 및 감염의심여부 확인에 대한 지원
8	응급수술·시술 행위 가산	권역센터	주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
		별표1 지역센터 지역기관	
		별표2 권역센터 지역센터	
		별표3 권역센터	

참고 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 개요 및 세부절차

□ 추진 배경

- () 대한 정기적인 지정 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

- (법적 근거)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(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)

□ 제31조의3(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
2.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설명회 개요

- (일정) 2022. 6. 14. 13:30 ~ 14:40, ZOOM 영상회의로 진행
- (대상)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담당자, 17개 시도 응급의료 담당 공무원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17개 응급의료지원센터 담당자

- (주요내용)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 기준

* 법정 지정조건, 그간 응급의료 실적, 향후 응급실 운영계획 등 평가

- (재지정 신청 절차)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신청 절차 준용

- () (일정) '22.7~12 권역응급센터 → 지역응급센터 → 지역응급기관 순으로 지정 절차 추진() (별도)

	지정신청 및 평가일정	지정결정 마감
권역응급의료센터	6. 15. ~ 8. 31.	8. 31. 까지
지역응급의료센터	9. 1. ~ 11. 4.	11. 4. 까지
지역응급의료기관	11. 5. ~ 12. 5.	12. 5. 까지
전문응급의료센터	6. 15. ~ 12. 5.	12. 5. 까지

* 세부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되, 지정결정 마감일까지 재지정을 완료하여야 함

①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

6월3주	계획 발표	▶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: 6월중
	↓↓	
7월2주	신청 접수	▶ 신청 접수기한 : ~ 7.8. (금) 18:00 -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시·도로 제출, 시·도는 심사 의견서 및 의료기관 제출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문 제출
	↓↓	
8월2주	현장평가	▶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 (7.25. ~ 8.17.) - 법정 지정기준 점검, 기존 운영계획 이행 실적 확인 ※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현장평가 종료시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며, 종합평가 시 심의
	↓↓	
8월4주	종합평가	▶ 종합평가 실시 : 8.22.(월)~23(화) - 운영계획서 서면검토 및 의료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※ 사업계획서는 8.1.(월)까지 변경하여 제출가능
	↓↓	
8월5주	최종 결과 발표	▶ 최종 재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: 8.31.(수)
	↓↓	
9월 ~ 11월	사업계획서 보완	▶ 재지정기관의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(~11.11.) 및 승인 - 평가위원단 권고사항 등 반영
	↓↓	
'23년도	지정 · 운영	▶ 재지정: '23. 1. 1. 기준으로 재지정 ▶ 22년 12.15.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·장비·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,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

< 조건부지정 >

☞ '22.12.15 시설·인력·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'23.3.31. 기준 충족여부를 '23년 4월 초까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미충족 시 조건부지정은 자동 취소
* (시행규칙 제13조6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

6월3주	재지정 계획 발표	▶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: 6월중
	↓↓	
9월1주 ~ 2주	재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	▶ 신청 접수기한 : ~9.16.(금) - 재지정 신청서,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마감 (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)
	↓↓	
10월 ~ 3주	현지평가	▶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 (~ 10.21.) - 법정 지정기준 점검 ※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신청하고 각 시도 사업 계획서 평가단이 심의
	↓↓	
10월 ~ 4주	종합평가	▶ 종합평가(~10.31.) - 운영계획 브리핑, 질의·응답 후 평가위원단 정성평가 및 종합평가 ※ 시도는 공공기관,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(5인이상) 현장평가 결과 및 운영계획서 평가 진행(시·도 지정권자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)
	↓↓	
11월1주	최종 결과 발표	▶ 최종 재지정 기관 결과 발표 및 통보 : ~ 11.4.(금)
	↓↓	
'23년도	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	▶ 재지정: '23. 1. 1. 기준으로 재지정 ▶ '22.12.15일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·장비·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,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

⑤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

6월3주	재지정 계획 발표	▶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: 6월중
	↓↓	
11월	재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	▶ 신청 접수기한 : ~ 11.11.(금) - 재지정 신청서,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마감 (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)
	↓↓	
11월	현장평가	▶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 - 법정 지정기준 점검
	↓↓	
12월1주	최종 결과 발표	▶ 최종 재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: ~ 12.5.(월)
	↓↓	
'23년도	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	▶ 재지정: '23. 1. 1. 기준으로 재지정 ▶ '22년 12.15일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·장비·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,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